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생략&gt;</b> <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8. &lt;생략&gt;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u>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좌동&gt;</b> <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8. &lt;좌동&gt;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율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07%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07%를 적용합니다.</u></p>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감면 혜택 반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0. <신설>		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할인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개정 시행(2023.12)
<p>② &lt;생략&gt; 제4조 &lt;생략&gt;</p> <p>[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조~제4조 &lt;생략&gt;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9. &lt;생략&gt;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u>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u> 11~13. &lt;생략&gt;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제16조 &lt;생략&gt;</p>		<p>② &lt;좌동&gt; 제4조 &lt;좌동&gt;</p> <p>[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p> <p>제1조~제4조 &lt;좌동&gt;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9. &lt;좌동&gt;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u>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u> 11~13. &lt;좌동&gt;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제16조 &lt;좌동&gt;</p>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u></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생략&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생략&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생략&gt; <u>1의2. &lt;신설&gt;</u></p> <p>2~6. &lt;생략&gt;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u>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신설&gt;</u></p> <table border="1" data-bbox="124 1697 710 202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예비)사회적기업</u></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좌동&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좌동&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좌동&gt; <u>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2항8호에 따른 국내 상장증권예탁증권(ETF)제외)에 대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체평균잔액의 70% 이상일 경우 해당 평균잔액은 수수료 산출시 제외합니다.</u></p> <p>2~6. &lt;좌동&gt;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4 1697 1359 202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u></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을 고려한 감면 혜택 반영</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혜택 반영</p>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8. <신설>		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7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를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 (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b>제3조~제4조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생략&gt;</b></p> <p><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생략&gt;</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u>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신설&gt;</p> <table border="1" data-bbox="153 1585 713 201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u>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b>제3조~제4조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좌동&gt;</b></p> <p><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좌동&gt;</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0%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u>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율 연 0.10%를 적용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8 1585 1339 2011">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감면 혜택 반영</p>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1. <신설>		1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
12. <신설>		1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을 고려한 감면 혜택 반영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② <좌동> 제4조 <좌동>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연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u></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b>[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생략&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생략&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생략&gt;</p> <p>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신설&gt;</u></p> <table border="1" data-bbox="151 1458 715 2069">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예비)사회적기업</u></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사회복지시설</td> <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p style="text-align: center;"><b>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b>[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좌동&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좌동&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좌동&gt;</p> <p>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5 1458 1339 2069">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u>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u></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사회복지시설</td> <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의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혜택 반영</p>
대상	판단기준																													
<u>(예비)사회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대상	판단기준																													
<u>사회적기업, 예비적기업</u>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예택 반영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9. <신설>		9.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8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생략&gt;</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제3조~제4조 &lt;생략&gt;</p> <p>[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2조 &lt;생략&gt;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생략&gt; <a href="#">10. &lt;신설&gt;</a></p> <p><a href="#">11. &lt;신설&gt;</a></p> <p>② &lt;생략&gt; 제4조 &lt;생략&gt;</p> <p>[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lt;생략&gt;</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좌동&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제3조~제4조 &lt;좌동&gt;</p> <p>[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제2조 &lt;좌동&gt;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좌동&gt; <a href="#">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 운영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할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운영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a></p> <p><a href="#">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a></p> <p>② &lt;좌동&gt; 제4조 &lt;좌동&gt;</p> <p>[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lt;좌동&gt;</p>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을 고려한 감면 혜택 반영</p>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생략&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p> <p>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lt;생략&gt;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lt;생략&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생략&gt; 8. &lt;신설&gt;</p>	<p>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좌동&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lt;삭제&gt;</p> <p>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p> <p>[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lt;좌동&gt;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lt;좌동&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lt;좌동&gt; 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8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p>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p>

#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 (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b>제3조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생략&gt;</b> <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생략&gt;</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u>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신설&gt;</p> <table border="1" data-bbox="151 1585 715 200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u>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b>제3조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좌동&gt;</b> <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lt;좌동&gt;</p> <p>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중 가장 낮은 기준인 연 0.15%를 적용하며, 그 외 할인 대상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u>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연 0.15%를 적용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8 1585 1337 2000">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감면 혜택 반영</p>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1. <신설>		1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10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운용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반영
12. <신설>		1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간 중에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제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비용을 고려한 감면 혜택 반영
제4~5조 <생략>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제4~5조 <좌동>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align="center"><b>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생략&gt;</b></p> <p align="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 <u>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u></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 align="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생략&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생략&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lt;생략&gt;</p> <p>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u>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lt;신설&gt;</u></p> <table border="1" data-bbox="151 1523 710 2038">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p align="center"><b>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좌동&gt;</b></p> <p align="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u>&lt;삭제&gt;</u></p> <p><b>제2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 align="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 &lt;좌동&gt;</b> <b>제2조(수수료의 징수)</b> ① &lt;생략&gt;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lt;좌동&gt;</p> <p>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u>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u>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u>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774 1523 1332 2038"> <thead> <tr> <th>대상</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td> <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 </tr> <tr> <td>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td> <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 </tr> <tr> <td>자활기업</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 </tr> <tr> <td>사회복지법인</td> <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 </tr> </tbody> </table>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기업 혜택 반영</p>
대상	판단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대상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0. <신설>		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그 날부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 계약기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되, 제9호에 의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기업 및 단체에 적용되는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은행과 자산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 할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빙서류 제출 없이 2024년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혜택 반영

#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연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3년 3월 3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u>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 3 조제 1 항제 9 호로 변경된 계약내용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생략&gt;</b></p> <p><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1의2. &lt;생략&gt; <u>1의3. &lt;신설&gt;</u></p> <p>2. &lt;생략&gt; 3. 제1호, <u>&lt;신설&gt;</u>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수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129 1585 735 1995"> <thead> <tr> <th>적립금자산평가액</th> <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 </tr> </tbody> </table> <p><u>3의2. 제3호의 수수료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9년 8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19년 8월</u></p>	적립금자산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p style="text-align: center;"><b>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lt;좌동&gt;</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 2 조(경과조치)</b>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용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u>2024년 4월 1일 개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b></p> <p><b>제1조~제2조 &lt;좌동&gt;</b></p> <p><b>제3조(수수료의 징수)</b>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1의2. &lt;좌동&gt; <u>1의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관리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운용손익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은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u></p> <p>2. &lt;좌동&gt; 3. 제1호, <u>제1의2호, 제1의3호</u>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전일 현재의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과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을 합산한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각각의 적립금이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으로 나뉘진 경우에도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783 1585 1342 1995"> <thead> <tr> <th>적립금자산평가액</th> <th>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h>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td> <td>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td> </tr> </tbody> </table> <p><u>3의2. 제1의3호에 적용하는 운용손익수수료율은 가목의 기본수수료와 나목의 손익수수료로 나누어 산정하며, 제1</u></p>	적립금자산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운용손익을 구분한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p> <p>인용조문 추가</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p>
적립금자산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적립금자산평가액	퇴직재산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가입자의 별도 부담으로 형성된 적립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0.25%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8%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1억원 이상	0.20%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15%)	0.06%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한 경우 0.03%)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30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적용합니다.</p>	<p>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산정된 계약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영방법 중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제외한 개별 사전지정운영방법의 기간수익률(이하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수익률”이라 합니다.)이 수수료 계산기준일에 확정된 다목의 기준지표를 상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은 경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p> <p>가. 기본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8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p> <p>나. 손익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로, 제3호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에 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p> <p>다. 기준지표 : 운용손익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개별 사전지정운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값이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0을 초과한 값을 적용합니다.</p> <p>개별 사전지정운영방법의 기준지표 =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영방법 공시수익률 X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주식 외 비중) + (위험자산 기준수익률 X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주식 비중)</p> <p>(1) “최근 공시된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영방법 공시수익률”이란 매분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공시되는 하나은행 초저위험 사전지정운영방법의 12개월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2)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이란 KOSPI 지수의 과거 10년 기간동안 매일 3년의 수익률을 산출, 이 3년 수익률 표본의 평균값을 기하평균하여 연환산한 값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의미하며, 위험자산 기준수익률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3) 개별 사전지정운영방법의 주식 외 비중 및 주식 비중은 정수로 산정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재산정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4) 산정된 개별 사전지정운영방법의 기준지표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p> <p>라.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수익률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계산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수익률 산정시 수수료 할인 제도 시행일인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p> <p>[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 계산기간 중 발생한 지급액(중도인출, 연금지급 등)]/[계약일 또는 수수료 직전 계산 기준일의 사전지정운영방법별 적립금 자산평가액 + 부담금납입액]-1</p> <p>&lt;제3호의2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적용 예시&gt;</p> <table border="1" data-bbox="762 1850 1342 2051"> <thead> <tr> <th rowspan="2">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th> <th colspan="2">사용자부담금</th> <th colspan="2">개인부담금</th> </tr> <tr> <th>1억미만</th> <th>1억이상</th> <th>1억미만</th> <th>1억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초과 성과(A)</td> <td>0.25% (0.15%)</td> <td>0.20% (0.15%)</td> <td>0.08% (0.03%)</td> <td>0.06% (0.03%)</td> </tr> </tbody> </table>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초과 성과(A)	0.25% (0.15%)	0.20% (0.15%)	0.08% (0.03%)	0.06% (0.03%)	<p>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운용손익을 구분한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p>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초과 성과(A)	0.25% (0.15%)	0.20% (0.15%)	0.08% (0.03%)	0.06% (0.03%)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4~8. &lt;생략&gt;</p> <p>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0. &lt;생략&gt;</p> <p>② &lt;생략&gt;</p> <p>제4~5조 &lt;생략&gt;</p>	<p>동일(B)</p> <p>0.20% (0.12%)</p>	<p>0.16% (0.12%)</p>	<p>0.064% (0.024%)</p>	<p>0.048% (0.024%)</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구분에 대한 할인을 차등없이 계약이전, 중도해지 등에도 적용</p>
	<p>미달 성과(C)</p> <p>0.15% (0.09%)</p>	<p>0.12% (0.09%)</p>	<p>0.048% (0.018%)</p>	<p>0.036% (0.018%)</p>		
<p>※ ( ) 안은 전자금융으로 신규 계약한 경우</p>						
<p>4~8. &lt;생략&gt;</p> <p>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lt;삭제&gt;</p> <p>10. &lt;좌동&gt;</p> <p>② &lt;좌동&gt;</p> <p>제4~5조 &lt;좌동&gt;</p>						

###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4년 4월 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생략&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p> <p>[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lt;생략&gt;</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lt;생략&gt;</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8. &lt;생략&gt;</p> <p>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0. &lt;생략&gt;</p> <p>③ &lt;생략&gt;</p>	<p>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lt;좌동&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p> <p>[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p> <p>제1조 &lt;좌동&gt;</p> <p>제2조(수수료의 징수)</p> <p>① &lt;생략&gt;</p> <p>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8. &lt;좌동&gt;</p> <p>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lt;삭제&gt;</p> <p>10. &lt;좌동&gt;</p> <p>③ &lt;좌동&gt;</p>		<p>개정일 명시</p> <p>본 개정에 따른 예외 시행 명시</p> <p>2024년 1월 고용노동부 수수료 부과기준 지침에 따른 업무구분에 대한 할인을 차등없이 계약이전, 중도해지 등에도 적용</p>